

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


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0번지 소재 양천자원회수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공동이용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 및 양천구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, 양천주민지원협의체(이하 “병”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『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』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 소재 자치구와 타 자치구(강서구, 영등포구) 폐기물을 반입하여 공동이용시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폐촉법”이라 한다)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고 “갑”·“을”·“병”의 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설의 지하화) ①“갑”과 “을” 및 “병”은 시설의 노후 및 내구연한 소진으로 전면 교체시에는 시설의 지하화를 위해 상호 협조하여 추진한다.
②“갑”과 “을” 및 “병”은 시설의 노후 및 내구연한 소진에 대한 평가를 매 7년 주기로 한다.

제3조(처리대상 폐기물) ①시설에 반입·처리하는 폐기물은 “갑”의 관할 구역(양천구, 강서구, 영등포구)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한다.
②반입기준은 시설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치구와 “갑”·“을” 및 “병”이 협의하여 정한다.
③폐기물은 저공해 소형차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.

제4조(책무) ①“갑”은 시설의 안전운영과 간접영향권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
②“갑” 및 반입 자치구청장은 반입폐기물의 성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, 대시민 언론 홍보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“병”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 제1항의 관할구역내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반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 ①“갑”은 “병”이 거주하는 간접영향권지역 3,413가구(양천구 목5동 한신청구아파트 및 목1단지아파트, 한신빌라트)에 대하여 서울시 기금조례에서 정한 주민지원기금(난방비 70%, 반입수수료 10%, 타자치구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 10%)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을 특별출연한다.

1. 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× 21,000원/톤
2. 1호의 주민지원기금 출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3. 공동이용 특별출연금을 일시금으로 37억원 출연한다.

②타 자치구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반입분에 대한 특별출연금의 조성은 공동이용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③“갑”과 “병”은 제1항 제1호의 기금출연에 대하여는 2년마다 생산자물가지수(도매물가지수)를 고려하여 반영한다.

④“을”은 “병”이 간접영향권 거주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지원 요구시 서울시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로 양천구 조례규정에 의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. 단, 매년 1억 5천만원씩 10년간 총 15억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“을”과 “병”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기간은 조정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“을”과 협의하여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 “을”이 부담하는 매년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지원한다.

제6조(주민지원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시설의 간접영향권 지역주민 양천구 목5동(한신청구아파트 1,512가구, 목1단지 1,882가구, 한신빌라트 19가구) 3,413가구를 위하여 사용한다.

②기금의 용도는 폐촉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서울시 기금조례 제3조(기금의 용도)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한다.

제7조(안전관리 및 운영)“갑”은 “병”과 협의하여 시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, “병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시설의 안전진단과 점검 대책을 수립한다.

①폐기물 반입차량의 사업장 소음 및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②시설내에 운영사 소속의 적법한 환경관리자를 두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도록 한다.

③“갑”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“병”이 원하는 경우 시설의 참관 및 확인, 일일 업무일지, 정비일지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2. 시설이 가동중 고장이 발생하면 “병”에게 통보하고 고장의 정도에 따라 “갑”과 “병”이 협의하여 가동중지여부를 결정한다.
3. 소각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관리하며, 운영사는 각 오염물질들의 월간 발생총량을 “병”에게 제출한다.
4.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항에 따라 3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. 단, 추가검사항목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5. 폐촉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환경상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. 단, 추가조사항목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6. “갑”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「주민건강 영향조사-연구」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. 단, 추가조사항목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④“병”은 주민지원기금으로 다이옥신 등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⑤“갑”과 “병”은 현재의 시설로써 대기오염물질이 최소로 배출될 수 있는 시설관리방안 및 추가설비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체결 후 기술용역을 실시하여 조치한다.

1. 후단 경찰필터(폴리스필터) 추가설치
2. 비산재 및 바닥재 처리시설 보강
3. 폐수처리시설 보강
4. 폐기물 반출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및 차량의 탱크로리화
5. 시설 내부청소 매뉴얼 작성

제8조(주민감시요원) 주민감시요원은 폐촉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위촉하고 제반 복무규정은 폐촉법 제25조 및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.

제9조(기타 주민지원) ①“갑”은 시설에 환경홍보관, 시청각실, 견학통로, 관리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.

②“갑”은 시설의 경관 개선을 위하여 외관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“갑”과 “병”은 최대한 협조하며 협의한다.

③“갑”과 “병”은 현재의 주민편익시설의 협소 및 미비,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하며 이에 관하여 별도 협의한다.

④“갑”은 “병”의 지원요구가 있을 시에는 간접영향권지역주민들의 복지 혜택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해 양천 주민편익시설의 열요금을 감면한다.

⑤“갑”은 기존 영향권지역주민들의 심리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이에 따라 공장지대를 연상케 하는 기존 굴뚝의 수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감소하도록 한다.

제10조(협약의 변경) 이 협약의 내용은 “갑”과 “병”이 상호 합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.

제11조(협약의 해지) “갑”과 “병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2. 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등으로 사업수행의무 또는 필요성이 없어진 때
3. “갑” 또는 “병”이 협약서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4. 기타 이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2조(협약의 효력) ①본 협약은 “갑”과 “을” 및 “병”이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지켜야 하고, 협약의 변경 또는 시설의 폐쇄시까지 유효하다.

②본 협약은 “갑”과 “을” 및 “병”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.

③본 협약 체결의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하고 공증하여 1부씩 보관한다.

2010년 5월 10 일

“갑” 서울특별시



시장 명에 의하여

자원순환담당관

김영중

“을” 양천구



구청장 명에 의하여

주민생활지원국장

김영구

“병”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



원 장

김상희

위 원

위 원

신우영

위 원

박종숙

위 원

유찬

위 원

이형순

위 원

위찬

위 원

남궁원자

위 원

이재희

위 원

최연순

위 원

배주익

